고용노동부	보도참고자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	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5. 27.(금)
담당 부서	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부희 (044-202-7454)
		담당자	서기관 박보현 (044-202-7418)

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

□ 2022. 5. 26. 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노태악)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(2017다292343)은

○ “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·채용,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”는 **강행규정**이므로 단체협약·취업규칙·근로계약에서 **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**하였고,

○ **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**를 **합리적인 이유** 없이 **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** 시행한 경우 **무효**로 판단하였으며, 그에 따른 **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*을 제시**한 것에 의미가 있음

*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,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,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,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

□ 다만,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, **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**될 수 있음

□ 향후 고용노동부는 **관련 판례 분석**, **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**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